

제2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5건)

거창군의회

- 목 차 -

의안번호	건 명	쪽수
2024-100	거창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024-101	거창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8
2024-102	거창군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및 지원 조례안	13
2024-103	거창군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7
2024-104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거창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향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24-100	발의일자	2024. 10. 14.
		발의자	김향란,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1. 제안이유

거창군의 응급의료 서비스와 응급의료기관 의료체계 및 시설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관계 법령과 용어 등을 정비하고 삭제하여, 조례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법률 위임이 아닌 자치조례임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조)
- 나. 상위법령에 재기재된 사항 삭제(안 제2조)
- 다. (군의 책무)->(군수의 책무) 변경 및 약칭 표현 수정(안 제3조)
- 라. 상위법령 저촉 삭제 및 응급의료기관 시설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으로 변경함(안 제4조3)
- 마. 법률 개정으로 인한 삭제(안 제5조제1항제2호)
- 바. 조례상의 용어 등을 일괄 정비함(군->거창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조, 제16조, 제31조, 제47조의2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
- 「의료법」 제3조
- 「노인복지법」 제34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다. 합의: 보건정책과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4. 9. 30. ~ 10. 04.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의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의 제목 “(군의 책무)”를 “(군수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군은”을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입 및 설치비용
3.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제5조제1항제1호 중 “군”을 “거창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각각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응급의료의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2조(정의)</u>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u>제2조(정의)</u>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p>
<p>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p>	<p>1. <삭제></p>
<p>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 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p>	<p>2. <삭제></p>
<p>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p>	<p>3. <삭제></p>

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5.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로서 법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제세동기(AED)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말한다.

제3조(군의 책무) 군은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및 응급장비 설치에 필요한 재정지원,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홍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응급의료의 지원) 군수가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구입 및 설치 비용

2. (생략)

3.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

4. (생략)

4. <삭 제>

5. <삭 제>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및 응급장비 설치에 필요한 재정지원,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홍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응급의료의 지원) 군수는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입 및 설치비용

2. (현행과 같음)

3.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4. (현행과 같음)

<p>제5조(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권장 및 관리) ① (생 략)</p> <p>1. <u>군</u>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p> <p>2. 「<u>공중위생관리법</u>」 제2조제1항 제8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로서 「<u>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u>」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 축물 또는 시설</p> <p>3. ~ 6. (생 략)</p> <p>② · ③ (생 략)</p>	<p>제5조(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권장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p> <p>1. <u>거창군</u>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p> <p>2. <u>〈삭 제〉</u></p> <p>3. ~ 6. (현행과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	----------------------------------------------------------------------------------------------------------------------------------------------------------------

거창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가. 관련 조문 : 안 제4조(응급의료의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2호

3. 미첨부 사유

가.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나. 또한 대부분 법률 개정사항 및 약식 표현 개정

4. 작성자 : 보건정책과장 신 순 화

거창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김홍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4-101
----------	----------

발의일자	2024. 10. 14.
발의자	김홍섭,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표주숙,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1. 제안 이유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거창군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안 제4조~5조)
- 라. 공공자금 운용 평가 및 반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마.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바.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1조
- 「지방재정법」 제9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 「지방회계법」 제38조
- 「거창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2조, 제8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다. 합 의: 재무과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10. 02. 10. 10.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5) 참고: 해당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공공자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거창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관리하여 수익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① 군수는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2. 월별·분기별 세출예산 배정 및 집행 종합계획
3. 월별·분기별 공공자금 배정 및 지출계획
4. 그 밖에 군수가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군수는 공공자금을 사업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이자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하여야 한다.

- 제6조(공공자금 운용 평가 및 반영 등)** ① 군수는 공공자금 운용에 대하여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4조 제1항에 따른 거창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의회 보고 등)** ① 군수는 「거창군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 제8조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별로 보고받은 공공자금 운용 상황보고서를 거창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공공자금 운용 상황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금과목별 금액 및 예치기간
 2. 금융상품별 수익률
 3. 이자수입 총액
 4. 그 밖에 군수가 공공자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교육)** ① 군수는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교육·연수를 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군의 공공자금 운용·관리에 대한 자문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토종농산물 보존 ·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홍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4-102
----------	----------

발의일자	2024. 10. 14.
발의자	이홍희,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1. 제안 이유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산물 및 종자를 보존·육성함으로써 거창군의 전통 농산물에 대한 대외 경쟁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종합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 결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 ·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제15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다. 합의: 농업기술과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4. 10. 07. ~ 10. 14.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산물 및 종자를 보존·육성함으로써 거창군의 전통 농산물에 대한 대외 경쟁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종농산물”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의 야생종과 나목의 재래종 중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지정한 것을 말한다.
2.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토종농산물의 보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반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군수는 토종농산물의 보존과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창군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토종농산물 조사·관리·재배 등의 현황
2. 토종농산물 품종 지정에 관한 사항
3. 토종농산물 품종 보존·육성 및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토종농산물 판매·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 ① 군수는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토종농산물 채종포·전시포 사업
2. 토종농산물 증식을 위한 하우스 시설 및 농자재 지원
3. 토종농산물 보급 확대를 위한 포장재 지원
4. 그 밖에 토종농산물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기준과 지원 신청 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 대상 결정 등)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부칙 <조례 제 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표주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4-103
----------	----------

발의일자	2024. 10. 14.
발의자	표주숙,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1. 제안 이유

도시민의 농촌체험·휴양수요 충족 및 도시와 농촌 간 교류를 촉진하여 농촌사회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복지·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군수와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마을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농촌체험·휴양마을의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6조, 7조
- 나. 예산조치: 필요시
- 다. 합의: 행복농촌과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9. 27. ~ 10. 4. (8일간)
 - 나) 예고결과: 해당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촌체험·휴양마을”이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마을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민과 농어촌주민 간의 상호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사회를 활성화하고,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어촌 부촌자원을 유지·발전시켜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농촌 체험마을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마을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거창군의 농촌체험·휴양마을 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 및 지원) 군수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의 자연환경, 영농·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생활체험·휴양자원의 개발
2. 농촌체험·휴양마을의 확산을 위한 체험시설 분야
3. 농촌체험·휴양마을 프로그램 개발 보급사업
4.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비 지원 사업
5. 마을축제 지원 사업
6.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관한 홍보와 단체 체험객 유치지원
7.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
8. 그 밖에 농촌체험·휴양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포상) 군수는 사업 실적이 우수한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혜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4-104
----------	----------

발의일자	2024. 10. 14.
발의자	김혜숙,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1. 제안 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권고(22.12.26.)에 따라 의원이 공소제기 된 후 구금상태 및 징계를 받을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제한을 정함(안 제6조의2)
- 1)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을 경우: 전액 삭감
 - 2)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별로 삭감 또는 감액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제100조
-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다. 합의: 해당없음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10. 04. ~ 10. 13.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의정활동비·월정수당의 감액)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전액 삭감지급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감액 지급한다.

1.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전액 삭감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가.
 가.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이나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나.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다.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3.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 환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의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징계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p> <p>①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p> <p>② 의정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한다.</p> <p>③ 의정활동비·월정수당은 거창군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p> <p>④ 거창군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p>	<p>제2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p> <p>①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p> <p>② 의정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한다.</p> <p>③ 의정활동비·월정수당은 거창군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p> <p><삭 제></p>
<신 설>	<p>제6조의2(의정활동비·월정수당의 감액)</p> <p>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전액 삭감 지급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감액 지급한다.</p> <p>1.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p>

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전액 삭감 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

가.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이나 「거창군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나.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다.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3.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 환수